

4) 경제적 기반

향교는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나라에서는 초기부터 경제적 기반으로 향교전과 향교노비를 군현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우선 향교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향교전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태종대부터 책정되기 시작하였다. 1406년(태종 6)에 제향을 위한 제전과 교육을 위한 늪전(학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이미 책정된 향교전 가운데 제전은 그대로 두고 늪전은 재조정하였다. 이때 책정된 토지는 몰수된 사원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406년 3월에 242개만 남기고 사원의 철폐를 단행하였다. 철폐된 사원의 토지는 사노비와 함께 속공되어 군자전과 전농사(典農寺)의 관할로 이속시켰다. 이 군자전의 일부를 향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토지는 몰수된 사원전이었을 것이다.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여 향교에 이속시켰다는 것은 조선시대 억불승유정책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445년(세종 27)에는 제전을 재조정하였다. 그뒤 성종대에도 학전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더니 결국 토지의 액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1492년(성종 23)에 완성된 『태전속록(大典續錄)』에 학전은 주와 부에는 10결, 군에는 7결, 현에는 5결로 법제화되었다. 이때의 학전은 교육활동을 위한 늪전과 제향을 위한 제전을 통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1406년의 향교전 책정부터 영조대의 『측대전』까지 향교전 액수 변천은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향교전의 액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종대의 액수를 보면 이전보다 1/5로 축소되었다. 이는 향교 피폐의 중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조치가 있게 된 것은 관학이 가지는 교육의 비효율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교관의 무능과 직임 회피, 교육효과의 저하에 따른 양반들의 향교 교육 외면, 군역 모면을 목적으로 한 평민교생들의 입교 증가, 그리고 교

향교전 지급규모 변화

(단위 : 결)

향교전 관 부		위전 (제전)		학전 (능전)			
		1406년	1445년	1406년 7월	1406년 윤7월	1492년	1746년 (축대전)
유수관(부)		6	15	50	50	10	7
대도호부·목		6	10	40	40	10	7
도호부	유교수관	4	4	15	30	10	7
	무교수관	4	4	10	30	10	7
군	유교수관	4	4	15	10	7	5
	무교수관	4	4	10	10	7	5
현		2	2	10	10	5	5

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과거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교육정책 등이 향교 교육의 쇠퇴를 초래하였고, 이를 반영하듯 향교전이 감축되었다. 어쨌든 1492년에 조정된 향교전은 영조대에 이르러 주·부에 7결, 군·현에 5결로 감소되었다. 이후 고종 때 편찬되는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은 없었다.

나라에서 지급한 학전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을 준 것이었다. 학전의 조세를 관가에서 수납한 뒤 결수에 맞게 조를 향교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수조 및 조 지급은 수령의 주관과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향교에는 나라에서 지급한 학전뿐만 아니라 직접 소유권을 가진 토지도 있었다. 나라에서 지급한 경제기반으로는 향교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향교에 출입하고 있는 양반들은 수령의 협조를 얻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토지를 마련하였다.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학전과 달리 향교마다 소유한 토지의 규모는 제각기 달랐다. 향교에서는 개인소유지처럼 토지대장을 마련하였는데 오늘날 남아 있는 양안·전답안·수조안 등이 그것이다. 향교 소유지는 일반 민전처럼 나라에 조세를 납부해야 했다.

순천향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향교전답병인개량안(鄕校田畞丙寅改量案)』이 전답의 지목과 규모를 기록해놓은 토지대장이다. 1912년 향교재산이 답 24만 9,609평, 전 8,589평, 대지 1,936평, 신종지 2,084평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당시 순천향교의 전답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향교노비는 1413년에 처음 책정되었고, 1417년에 다시 조정되었다. 그후 『형국대전』에서 재조

향교전담병인개량안』

향교노비수의 변화

시 기 \ 관 부	유수관	대도호부·목	도호부	군	현
1413년	20호	15호	10호	7호	5호
1417년	30구	25구	20구	15구	10구
형국대전』	30명	25명	20명	10명	10명

정되었고, 『태전회통』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향교노비수의 변동은 앞의 표와 같다.

태종대에 책정된 향교노비는 사원 혁파로 생겨난 사노비를 전농사에 이속시켰다가 각 향교에 지급한 것이었다. 향교노비는 공천(公賤)으로 지방관아에서 입역하는 관노비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은 『추교집록(受教輯錄)』에서 ‘물허면천(勿許免賤)’이라 하였듯이 강하게 예속되었다. 이는 각종 잡역을 변함 없이 담당하여 향교의 운영과 유지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였다.

향교노비의 임무로는 향교수직·사환·각종 잡역 담당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교노(校奴)의 소임은 주로 수직과 사환이었다. 수직은 일에 따라 향교를 운반수직하는 전직이나 재직, 향교 재물을 보관하는 고직(고자), 향교 소유의 산림을 감시하고 땔감을 제공하는 산직·화직 등이 있

향교노비안』

었다. 교비(校婢)는 주로 사환을 맡았는데, 이들도 임무에 따라 식비·주비·채비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주로 제례 때 음식과 제수를 마련하고 교임·유생들의 식사를 위한 주방일을 담당하였다.

그밖에 노비들이 맡은 일들은 제수 운반, 유생들에 대한 연락, 통문 전달, 교임·유생들의 사무 배행 등이었다. 한편 향교 안에서 모든 잡역을 담당하는 노비 이외에 외거하는 노비들은 직접 사역을 담당하는 대신 향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신공을 납부하였다. 결국 향교노비는 향교의 운영과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향교노비는 생산·기진(寄進)·매득·투탁 등의 방법으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향교마다 달랐고, 따라서 숫자도 향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향교노비는 대체로 18세기 중반 이후 신분제 변동에 따라 점차 감소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노비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 노제 등의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도망이었다. 노비 도망이 조선 후기 노비제 변동에서 노비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고 향교노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밖에 노량처소생종모법(奴良妻所生從母法)·속량·매각·공로면천 등도 향교노비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향교노비안』을 보면 노비 21구 가운데 향교에서 일하는 노비는 11구, 낙안·별교·송광에 외거하면서 신공을 바치는 노비가 4구, 도망한 노비는 6구였다.